

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5. 제 천 시 장
 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1. 6.
 다. 상 정 일 자 : 2009. 11. 12.(제1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고암동 보미 파란채 아파트 및 강저국민임대주택 단지(영천동, A-1블럭) 신축에 따라 통·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증진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고암동에 보미 파란채 아파트 378세대 신축에 따른 통반 증설 : 2통 12반 (고암 19~20통 신설) / 378세대
- 영천동에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(A-1블럭) 아파트 872세대 준공 예정에 따른 통반 증설 : 6통 25반 (영천17-22통) / 872세대

구 분	현 행		조 정 안		증 감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고암모산동	21	114	23	126	2	12	※ 고암 19통~20통 신설
서부영천동	31	131	37	156	6	25	※ 영천 17통~22통 신설

- 별표의 이·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“고암 제18통”란 다음에 “제19통 내지 20통”을 “영천 제16통”란 다음에 “제17통 내지 제22통”을 신설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【 법적 검토 】

- 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제3조 (획정기준)는
 - 이·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
 -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하되, 50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 마을,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본 조례안에서는 1개통은 4내지 6반 범위내에서
1개반은 25세대 내지 48세대 범위안에서 확정하였으므로
통반은 조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한 것으로 판단됨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고암동 보미 파란채 아파트의 경우 09.10.8 준공 허가를 득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, 영천동 강저국민임주택단지 아파트도 09년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
- 적기 통·반 조직구성으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과 같이 통반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)

“없 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